

##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

제정 2024. 5. 17. 규칙 제1661호

제1조(「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문화재매매업”을 “문화유산매매업”으로, “문화재 매매업자”를 “문화유산매매업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3조”를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92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중 “3.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(문화재 매매업자에 한정함)”을 “3.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(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정함)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소장품 카드 중 “문화재지정”을 “문화유산지정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문화관광과 소관 중 일련번호 10 단위사무명란의 “문화재”를 각각 “국가유산”으로 하고, “무형문화재”를 “무형유산”으로 하며, 일련번호 11의 단위사무명란 중 “문화재 매매업허가”를 “문화유산매매업 허가”로 하고, “라. 문화재 매매업”을 “라. 문화유산매매업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문화관광과 소관 분장사무 중 “26. 문화재지정”을 “26. 국가유산 지정”으로 하고, “31. 문화재”를 “31. 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서 2의 표 중 시설 직렬 건축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

직류의 “문화재수리기술자”를 “국가유산수리기술자”로 한다.

별표 10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·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에서 가의 표 중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“문화재관리학”을 “국가유산관리학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의 개정)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·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에서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“문화재관리학”을 “국가유산관리학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2의 표에서 시설 직렬 건축 직류의 “문화재수리기술자”를 “국가유산수리기술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